

제 13 장 기업인의 일시입국

제13.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기업인이라 함은 상품 무역, 서비스 공급 또는 투자 활동의 수행에 종사하는 일방 당사국의 국민을 말한다. 그리고

일시입국이라 함은 타방 당사국의 기업인이 영주할 의사 없이 일방 당사국의 영역내에 입국하는 것을 말한다.

제13.2조 일반 원칙

1. 제13.2조에 부가하여, 이 장은 양 당사국간의 특혜적인 무역관계, 상호주의 원칙에 기초한 일시입국 촉진 및 일시입국에 대한 투명한 기준과 절차 설정의 필요성, 그리고 국경의 안전 보장과 국내 노동력 보호 및 각 당사국 영역내의 영구취업 보호의 필요성을 반영한다.

2. 양 당사국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업인여행카드 “운영지침”에 규정된 자발적인 약속을 재확인한다. 이러한 인정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일반원칙에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

제13.3조 일반 의무

1. 각 당사국은 제13.2조에 따라 이 장의 규정들과 관련된 조치를 취하고, 특히 이 협정에 따른 상품 또는 서비스 무역 또는 투자활동의 수행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지연시키지 않도록 동 조치를 신속히 적용한다.

2. 양 당사국은 이 장의 이행을 위한 공통의 기준, 정의 및 해석의 개발 및 채택을 위해 노력한다.

제13.4조 일시입국 허용

1. 각 당사국은 이 장에 따라서 그리고 부속서 13.4 및 부속서 13.4.1의 규정을 조건으로 하여, 공중보건과 안전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적용가능한 법령에 따라 입국할 자격이 있는 기업인의 일시입국을 허용한다.

2. 일방 당사국은 기업인의 일시입국이 다음 사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기업인의 취업을 인가하는 입국서류의 발급을 거절할 수 있다.

- 가. 취업 장소 또는 취업 예정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동분쟁의 해결, 또는
- 나. 그러한 분쟁에 관여된 인의 취업.

3. 일방 당사국이 제2항에 의거하여 취업을 인가하는 입국서류의 발급을 거절할 때, 그 당사국은

- 가. 당해 기업인에게 거절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 나. 타방 당사국에 거절사유를 서면으로 조속히 통지한다.

4. 각 당사국은 기업인의 일시입국 신청을 처리하기 위한 수수료를 제공된 서비스의 대략적 비용으로 한정한다.

제13.5조 정보의 제공

1. 제17.3조에 부가하여, 각 당사국은

- 가. 이 장과 관련된 자국의 조치를 타방 당사국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자료를 타방 당사국에 제공한다.
- 나. 이 협정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장에서 규정된 일시입국 요건에 관한 설명자료를 타방 당사국의 기업인들이 알 수 있도록 통합된 서류의 형태로 작성, 공표하고 자국 및 타방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당사국은 입국서류를 발급받은 타방 당사국의 기업인에 대한 이 장에 따른 일시입국의 허용과 관련된 각 업무, 직업 또는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포함한 자료를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수집·보관하고, 타방 당사국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제13.6조 실무작업반

양 당사국은 이 장의 이행과 운영 및 상호 관심이 있는 조치를 검토하기 위하여 출입국 공무원을 포함한 각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일시입국 실무작업반을 설치한다.

제13.7조 분쟁해결

1.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일방 당사국은 이 장에 따른 일시입국 허용의 거절 또는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되는 특정 사안에 관해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가. 그 사항이 반복된 관행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나. 그 기업인이 그 특정 사안에 관해 가용한 모든 행정적 구제절차를 완료하였을 경우.

2. 주무 당국이 행정절차가 개시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최종 판정을 내리지 않았고, 판정을 내리지 못한 것이 그 기업인이 야기한 지체에 기인하지 않은 경우, 제1항 나호에 언급된 모든 구제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13.8조 다른 장과의 관계

이 장과 제1장, 제2장, 제18장, 제19장, 제21장 및 제17.2조, 제17.3조, 제17.4조, 제17.6조를 제외하고,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에 출입국 조치와 관련한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속서 13.4 기업인의 일시입국

제1절 - 상용방문자

1. 각 당사국은 부록 13.4.I.1에 규정된 상용 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인이 일시입국에 적용되는 기존의 출입국관리 법령을 준수하고 다음을 제시한 경우, 취업허가를 획득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일시입국을 허용한다.

가. 일방 당사국 국민임을 증명,

나. 기업인이 당해 활동에 종사하고자 함을 입증하고 입국목적은 기술하는 서류, 그리고

다. 계획된 상용활동의 범위가 국제적이고, 그 기업인이 현지 노동시장에 진입하고자 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증거.

2. 각 당사국은 기업인이 다음 사항을 입증함으로써 제1항 다호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

가. 계획된 상용활동의 주 수입원이 일시입국을 허용하는 당사국의 영역밖에 있고,

나. 기업인의 주 영업소 및 실제 이윤 발생 장소가 적어도 현저하게 그 영역밖에 있음.

3. 각 당사국은 부록 13.4.I.1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상용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기업인이 일시입국에 적용되는 기존의 출입국관리 법령을 준수하는 경우, 취업 허가를 획득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부록 13.4.I.3에 규정된 법령의 기존 규정에서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일시입국을 허용한다.

4. 어느 당사국도

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일시입국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절차, 청원, 노동인증심사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다른 절차를 요구하거나,

나.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일시입국과 관련하여 어떠한 수적 제한도 부과하거나 유지하여서는 아니된다.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일방 당사국은 이 절에 따라 일시입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인에게 입국에 앞서 자국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증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것의 취득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사증요건을 부과하기에 앞서 그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과 이러한 요건 부과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의를 한다. 기존의 사증발급 요건과 관련, 요청이 있을 경우 일방 당사국은 이를 폐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방 당사국과 협의한다.

제2절 - 무역업자 및 투자자

1. 각 당사국은 해당 기업인이 일시입국에 적용되는 기존의 출입국관리 법령을 준수하는 한, 관리자나 임원의 자격으로 또는 핵심적 기술과 관련된 자격으로 다음 활동을 하고자 하는 기업인에게 일시입국을 허용하고 확인 서류를 발급한다.

가. 당해 기업인이 주로 자신이 국민인 일방 당사국의 영역과 입국하고자 하는 타방 당사국의 영역간에 실질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 무역에 종사, 또는

나. 당해 기업인 또는 동 기업인의 기업이 상당한 자본을 투자했거나 투자하는 과정에 있을 때, 이 투자의 설립, 개발, 관리 또는 그 운영에 대한 자문 또는 핵심적인 기술 서비스의 제공.

2. 어느 당사국도

가. 제1항에 따른 일시입국의 조건으로 노동인증심사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다른 절차를 요구하거나,

나. 제1항에 따른 일시입국과 관련하여 어떠한 수적 제한도 부과하거나 유지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방 당사국은 이 절에 따라 일시입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인에게 입국에 앞서 자국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증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것의 취득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사증요건을 부과하기에 앞서 그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과 이러한 요건 부과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의를 한다. 기존의 사증발급 요건과 관련,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일방 당사국은 이를 폐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방 당사국과 협의한다.

제3절 - 상사주재원

1. 각 당사국은 해당 기업인이 일시입국에 적용되는 기존의 출입국관리 법령을 준수하는 한, 관리자나 임원의 자격으로 또는 전문지식과 관련된 자격으로서 일방 당사국의 기업에 고용되어 그 기업, 자회사 또는 계열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인에게 일시입국을 허용하고 확인서류를 발급한다. 당사국은 해당 기업인이 입국허가신청일 직전 3년의 기간 중 1년동안 계속적으로 해당기업에 고용되어 있었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어느 당사국도

- 가. 제1항에 따른 일시입국의 조건으로 노동인증심사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다른 절차를 요구하거나,
- 나. 제1항에 따른 일시입국과 관련하여 어떠한 수적 제한도 부과하거나 유지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방 당사국은 이 절에 따라 일시입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인에게 입국에 앞서 자국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증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것의 취득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사증요건을 부과하기에 앞서 그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과 이러한 요건 부과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의를 한다. 기존의 사증발급 요건과 관련,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일방 당사국은 이를 폐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방 당사국과 협의한다.

부속서 13.4.1

칠레의 경우

1. 부속서 13.4에 규정된 범주에 따라 칠레에 입국하는 기업인은 국익에 부합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2. 부속서 13.4에 규정된 범주에 따라 칠레에 입국하는 기업인은 1년 이내의 단기거주사증을 발급받는다. 이러한 사증은 발급된 조건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영주권을 신청하도록 요구됨이 없이 동일한 기간씩 연장될 수 있다.
3. 칠레에 입국하는 기업인은 또한 외국인 신분증을 취득할 수 있다.
4. 부속서 13.4에 규정된 범주에 따라 칠레에 입국한 기업인은 상호주의의 기초 위에서 그들의 사증이 유효한 동안 재입국허가 없이 자유롭게 칠레에 입국하거나 칠레로부터 출국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1. 부속서 13.4의 제1절에 따라 한국에 입국하는 상용 방문자는 6개월 이내의 단기상용사증(C-2)을 발급받는다. 이러한 상용 방문자의 활동이 부속서 13.4 제2절 및 제3절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러한 사증은 주재사증(D-7), 기업투자사증(D-8) 또는 무역경영사증(D-9) 등으로의 전환이 허용될 수 있다.
2. 부속서 13.4의 제2절에 따라 한국에 입국하는 투자자 및 무역업자는 각각 1년 이내의 기업투자사증(D-8)과 무역경영사증(D-9)을 발급받는다. 이러한 사증은 발급된 조건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동일한 기간씩 연장될 수 있다.
3. 부속서 13.4의 제3절에 따라 한국에 입국하는 상사주재원은 1년 이내의 주재사증(D-7)을 발급받는다. 이 사증은 발급된 조건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동일한 기간씩 연장될 수 있다.
4. 부속서 13.4에 규정된 모든 범주에 따라 한국에 입국하는 기업인은 상호주의의 기초 위에서 그들의 사증이 유효한 동안 재입국허가 없이 자유롭게 한국에 입국하거나 한국으로부터 출국할 수 있다.

5. 한국에 91일 이상 머물고자 하는 기업인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록 13.4.I.1

상용방문자

1. 이 부록의 목적상, “타방 당사국의 영역”이라 함은 일시입국을 희망하는 당사국의 영역이 아닌 당사국의 영역을 말한다.

2. 부속서 13.4 제1절1항에 언급된 상용활동은 다음과 같다.

연구 및 설계

- 타방 당사국의 영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을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기술, 과학 및 통계 연구원

성장, 제조 및 생산

- 타방 당사국의 영역내에 소재한 기업을 위해 상거래를 수행하는 구매 및 생산관리 인력

마케팅

- 타방 당사국 영역내에 소재한 기업을 위해 분석 또는 연구를 수행하는 마케팅 연구원 및 분석가
- 상업행사에 참석하는 박람회 및 홍보 인력

영업

- 타방 당사국의 영역내에 소재한 기업을 위해 상품배달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주문을 받거나 계약을 협상하는 판매대표 및 대리인
- 타방 당사국의 영역내에 소재한 기업을 위하여 구매를 하는 자

유통

- 상품 수출입의 원활화에 관해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통관 중개인

사후서비스

- 일시입국을 희망하는 당사국의 영역밖에 소재한 기업으로부터 구매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상업 또는 산업장비 또는 기계의 판매에 부속된 보증이나 그 밖의 서비스 계약에 따라서, 보증 또는 서비스 합의기간 동안, 판매자의 계약상 의무에 필수적인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수행할 인력을 교육하는 설치자, 수리 및 유지 인력 및 감독자

일반서비스

- 국경간 서비스 공급 수준의 상용활동에 종사하는 컨설턴트
- 타방 당사국의 영역내에 소재한 기업을 위한 상거래에 종사하는 관리 및 감독 인력
- 타방 당사국의 영역내에 소재한 기업을 위한 상거래에 종사하는 금융서비스 인력(보험인, 은행원 또는 투자중개인)
- 사업관계자와 협의하거나 행사에 참석 또는 참가하는 홍보 및 광고 인력
- 행사에 참석 또는 참가하거나 타방 당사국 영역에서 시작한 여행을 인솔하는 여행업 인력(여행업자, 여행가이드 또는 여행관리자)
- 타방 당사국의 영역내에 소재한 기업의 직원으로서 서비스를 수행하는 번역가 또는 통역사

부록 13.4.I.3
현행 출입국관리 법령

1. 칠레의 경우, 타이틀 I호(대통령령 제1094호 제6항, 1975.7.19, 관보, 출입국관리법), 그리고 출입국관리법 규칙의 타이틀 III호(내무부령 제597호, 1984. 11.24, 관보, 출입국관리규칙).

2. 한국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7조 및 제8조(1999.2.5 개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1999.11.27 개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8조, 제71조 및 제76조(1999.12.2 개정), 단기상용(C-2), 단기종합(C-3) 사증 발급절차.